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. 1. 14 선고 2014가단147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4. 12. 10.

판결 선고2015. 1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원군 D 대 152m²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이수연

별지